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장겸・구자근・조정훈

박정하 · 서천호 · 서일준

최수진 · 엄태영 · 서범수
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,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.

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 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.

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.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

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"중독성 콘텐츠"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)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"라 한다)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음란"을 "중독성 콘텐츠·음란"으로 한다.

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4(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) ① 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(이하 "중독성콘텐츠제공 자"라 한다)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청소년 가입 여부를 확인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중독성콘텐츠제공자는 청소년 회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독성 콘텐츠가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특정 시간에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 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①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3. (생략) 1. ~ 1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14. "중독성 콘텐츠"란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(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 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 한다)를 제공하는 자(이하 "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"라 한다)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 를 말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 의 마련 등) ① -----의 마련 등) ① 방송통신위원 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 통되는 음란 · 폭력정보 등 청 ----중독성 콘텐츠·음란----소년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"청소년유해정보"라 한다)로부

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(생략)

<신 설>

제7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
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42조의4(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) ① 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(이하 "중독성콘텐츠제공자"라 한다)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청소년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중독성콘텐츠제공자는 청소년 회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독성 콘텐츠가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특정 시간에 알림을 제한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3				
---	--	--	--	--
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~ 25. (생 략)

④ (생 략)

-----.

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
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

4. ~ 2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